

< 2026년 원산지관리사 수출입통관 개정사항 - 교재순 >

● 관세법령 전체 ★★ - 타법 개정 (변경)

개정 전	개정 후
1. 기획재정부령 --> 2. 기획재정부장관 --> 3. 기획재정부 --> 4. 통계청장 --> 5. 산업통상자원부 --> 6. 산업통상자원부장관 --> 7. 환경부 --> 8. 특허청 -->	1. 재정경제부령 2. 재정경제부장관 3. 재정경제부 4. 국가데이터처장 5. 산업통상부 6. 산업통상부장관 7. 기후에너지환경부 8. 지식재산처

● 교재 20페이지(변경)

③ 근로날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-->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

● 교재 35페이지★ - 생산지원의 범위 명확화 (개정)

개정 전	개정 후
④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·설계·고안·공예 및 디자인 다만,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.	④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·개발·설계·고안·공예 및 디자인 다만,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을 제외한다

● 교재 78페이지 (개정)

-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관세등의 금액을 수령하고, 수입신고인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해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, 앞으로는 관세등의 금액만 수령해도 연대납부책임을 부여함.

개정 전	개정 후
(4) 구매대행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 (이하 “구매대행업자”라 한다) 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,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. :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①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②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	(4) 구매대행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 (이하 “구매대행업자”라 한다) 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: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①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②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

● 교재 138페이지(신설)

-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면제

개정 전	개정 후
㉠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과세가 격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 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: 생략 ㉡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: 생략	㉠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과세가 격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 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: 생략 ㉢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하는 경우 : 제86조제2항(품목분류사전심사)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㉠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㉡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

	우 ㉠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일까지 ㉡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 지
--	--

● 교재 258페이지 - 원료과세 신청시기 변경 (변경)

개정 전	개정 후
(2) 원료과세 ① 의의 생략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 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 라 관세를 부과한다.	(2) 원료과세 ① 의의 생략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 라 관세를 부과한다.